

#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15
----------	-----

제출년월일 : 2004. 5.

제출자 : 영주시장

## 1. 제안 이유

우리시가 2004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 내용

일련 번호	부 의 안 건	담당부서	비고
1	농기계 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 개발 연구실 신축	농촌지도과	

신축장소 : 영주시 안정면 안심 1리 131(농업기술센터내)

건립규모 : 연면적 1,124m<sup>2</sup>(지상2층)

### 사업개요

○ 규 모 : 지상2층(1,124m<sup>2</sup>(연면적 340평))

○ 예산액 : 600백만원(국비50%, 시비50%)

○ 주요구조물 : 철골구조/판넬

- 1층 562m<sup>2</sup>(170평) : 관리사무실, 부품창고,샤워실,화장실  
다목적창고, 대형크레인(2.8톤)

- 2층 562m<sup>2</sup>(170평) : 지역특산물 개발연구실, 농기계전시장

※ 2층이동 통로 : 3톤 리프트 및 계단

- 재원대책 : 총사업비 6억원중(기 확보 6억원)
- 국 비 3억원 : 2004년 기 확보
- 시 비 3억원 : 2004년 기 확보
- 추진기간 : 2004년 5월 ~ 2004년 12월

#### □ 목 적

- 농업인의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 지역의 기계화 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농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취급조작과 분해조립, 정비수리등의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신 시설 신축으로 농업인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하며,
- 지역특산물 개발 연구실 신축으로 지역특산물의 연구개발을 통한 향토 음식 발굴 및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 □ 추진방향

- 기존의 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 철거후 부지 활용
- 농기계 보관 및 수리와 지역 특산물 개발을 위해 최적화 할 수 있는 설계

### 3.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 붙임참조

- 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총괄표)
- ② 2004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 4. 관련법규

- 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③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관 련 법 규

##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 제 99·1·21>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③ ~ ⑤ <생략>

##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삭제 '95. 11. 18>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